

# Zoom-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 COVER STORY: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MRA) ..... 1

▶ FTA NEWS:  
2012 년 FTA 활용의  
주목할 만한 이슈 ..... 2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통관 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 ..... 3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5

▶ WHERE IS GRACE CHANG?:  
비전을 추수하라 ..... 7

▶ ABOUT WRITERS ..... 7

##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MRA)

관세청은 2012 년 1 월 1 일부터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발효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통관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 월 윤영선 관세청장이 벨기에에서 개최된 '제 117/118 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 중 뉴질랜드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AEO란 무엇이며, MRA(상호인정협정)의 체결현황, MRA(상호인정협정)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I.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는 수출입업체와 수출입 업무와 연관된 물류업체에 대하여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AEO 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제재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미국·중국·일본·EU 등 전 세계 50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 II. MRA(상호인정협정)란?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란 상대국의 AEO 제도를 자국의 AEO 제도와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AEO 제도를 시행 중인 국가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경우, 자국의 AEO 업체는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제도는 WCO SAFE Framework 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동 Framework 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로 자국의 실정에 맞게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AEO 제도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입 관련 업체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국가에서 통관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국에서 AEO 공인을 받았던 하더라도 해당국의 AEO 제도에 다시 가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국 세관 간에 시행 중인 AEO 제도의 연계를 위해 상호인정협정(MRA)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III. 우리나라의 MRA(상호인정협정) 체결현황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EU·일본 등 세계 50 개국이 AEO 제도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캐나다·싱가포르·일본·뉴질랜드 등 5 개국과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했으며, EU 등 주요국가 협정체결을 위한 연구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함께 가장 많은 AEO MRA 체결국이기도 한다.

### IV. 對 뉴질랜드 무역현황

현재 對 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5 년간 매년 증가해 2010 년 9 억 1800 만 달러에서 2011 년 11 월까지 10 억 3,000 만 달러로, 2011 년에 처음으로 10 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수출 물품은 석유제품, 자동차, 전기제품 등으로 수출비중도 2010 년 30%에서 2011 년에는 32.8%로 소폭 증가했다.

### V. 여타 MRA(상호인정협정)와 차이점

"혜택=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이 여타 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검사비용 하향 등 통관상 혜택이 해상 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항공화물 및 해상벌크 화물 등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아직은 통관상 혜택을 부여 받지 못한다. 다만, 2012 년 중 실시할 추가협상을 통해 통관혜택 부여대상 화물을 확대할 계획임으로 협상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I. 한-뉴질랜드 MRA 혜택 적용절차

#### 1) 수입의 경우

뉴질랜드 AEO 업체와 거래하는 수입업체가 AEO MRA 혜택을 받으려면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아(전산처리) 수입신고 시 입력해야만 혜택을 받게 된다.

#### 2) 수출의 경우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국내 AEO 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의 자동인식으로 별다른 조치가 없이 MR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VII. MRA(상호인정협정) 제도의 활용

위에서 설명 드린 MRA 제도를 통한 각종 혜택 및 효과 등은 AEO 인증획득 업체임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60 여 개 수출입업체가 이미 AEO 인증을 획득하여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또한 다수의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고자 진행 중에 있다. AEO MRA(상호인정협정) 제도가 귀사의 물류비용 절감 및 신규 마케팅 수단 등으로 폭 넓게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차 문 현

[mhcha@customservice.co.kr](mailto:mhcha@customservice.co.kr)

FTA News

# 2012 년 FTA 활용의 주목할 만한 이슈

우리나라는 지난 8 년간 동시다발적으로 주요 경제권과의 FTA 협상 추진해 왔다. 현재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45 개국이며 29 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다.<sup>1</sup> 특히, 올해는 한미 FTA 발효 등 FTA 협상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FTA 시대 발전의 원년,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있는 2012 년에 우리가 주목할만한 FTA 활용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

## 2012 HS 개정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은?

### □ HS 개정과 FTA 원산지규정<sup>2</sup> 과의 관련성

FTA 협정에서는 품목번호 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규정하고 있어 협정체결 시 PSR 상의 품목번호자체가 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동일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HS2012 상 품목번호와 기 발효된 협정상 품목번호가 상이할 경우 협정에 따른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HS 2007 에 따른 원산지 기준의 잠정적용

제 5 차 HS 협약 개정안(HS2012)에 따라 지난 2012 년 1 월 1 일부터 새로운 품목분류표(HS 2012)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 발효된 FTA(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이 HS2012 에 맞추어 개정되지 않아 필수불가결하게 HS2007 를 활용하여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관세청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품목분류표(HS 2007)에 따른 기준을 잠정 적용할 예정임을 공지하였으며, 개정된 HS2012 와 HS2007 를 비교한 376 개 품목별 연계표를 마련하여 활용토록 하였다.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공지사항 "HS2012 도입에 따른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운용 기준 공지"]

향후 HS2012 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FTA 상대국과의 협의 후 FTA 협정 및 법령 개정과 함께 공표될 예정이다.

### □ HS 가 변경된 376 개 품목의 수출입시 연계표 활용

HS2012(6 단위)상 품목은 총 5,205 개이며, 이중 연계표가 제공된 376 개(7.2%)에 대해서는 연계표를 활용하여 C/O 발급 및 협정관세적용 신청 시 참조하고 나머지 4829 개(92.8%)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HS2007 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 주의사항: C/O 발급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 시에는 HS2007 을 기준으로 하되, 수출입 신고시에는 HS2012 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번호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물품 : 모터사이클의 안장 (아래의 표는 연계표의 일부임)

HS 2012		HS 2007	
품목번호	정의	품목번호	정의
8714.10	모터사이클의 것 (모페드의 것을 포함한다)	8714.11	안장
		8714.19	기타

▷ 수출입신고서 상 HS는 2012기준으로 8714.10 기재

▷ C/O발급 및 협정관세적용신청시 HS는 2007기준으로 8714.11로 기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도 2007 PSR기준으로 판단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이렇게 달라진다.”

### □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개편

기업의 FTA 활용제고를 위해 도입된 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 시행 이후 동일업체가 다수 품목별 인증번호를 보유함으로써, C/O 발급 오류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 증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를 개편하여 품목별로 신청 시 마다 달라지던 인증번호를 최초인증번호로 단일운영하고 신청차수번호로 운영 또는 관할지 세관 별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201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개편된 내용

1 개 업체가 1 개 인증번호를 부여 받는 체계 (최초 인증번호)

동일업체 신청번호	인증서 번호			차수	유효기간	
	세관부호	연도	일련번호		시작일	만료일
12345	000	11	200001	001	2011-02-01	2014-01-31
45678	000	11	200001	002	2011-07-01	2013-06-30
78912	000	11	200001	003	2011-09-01	2013-08-31

#### □ 인증업체의 제도이용 방안

기준에 품목별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신청일자에 따라 발급된 인증번호가 최초 인증번호로 통합된다. 다만, 인증 유효기간은 각 차수별로 기존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운영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해당사항이 관세청 내부 시스템에 반영되는 일자는 2012년 2월 1일부터 이므로 이후로 C/O 발급 등 원산지 관련서류에 활용되는 인증번호는 개편된 번호 및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품목별 인증업체가 업체별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품목별 인증번호는 소멸되며, 개편된 번호

및 형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품목별 인증업체가 업체별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 기존 품목별 인증번호는 소멸되며, 인증만료일에 다수 인증품목에 대한 일괄 인증도 가능토록 개편될 예정이다

#### 신한관세법인

최 대 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mailto:dkchoi@customsservice.co.kr)

<sup>1</sup> **협정발효 및 체결:** 칠레, 싱가포르, EFTA 4 개국, ASEAN 10 개국, 인도, EU(27 개국), 페루, 미국(연내 발효예정)

**협상진행:** 캐나다, GCC 6 개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

**협상준비 및 공동연구진행:** 일본, 중국, MERCOSUR 4 개국,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6 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sup>2</sup> **원산지란,** 수출입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식물의 경우 성장한 국가, 공산품의 경우 제조 및 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의미하며, **원산지 규정이란,** 특정제품의 국적인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한다. FTA 협정상의 원산지규정은 그 충족여부에 따라 거래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FTA 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 원산지규정이 FTA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분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같은 이유에서다.

###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⑩

## 중국 통관 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

금년은 한중 양국이 수교한지 20년이 되는 한 해이다. 그 동안 양국 간 경제교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0 억불을 넘어서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 가고 있으며, 금년부터 양국이 추진하게 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실현될 경우에 양국 간 경제교류 및 교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본 호에서는 중국의 관세 통관 시 우리 기업들이 중국해관의 통관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았다.



#### □ 수출입신고 시 부실신고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

부실신고란 수량과 가격, 원산지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못한 경우로서, 이는 해관감관, 세금징수, 무역통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경우, 해관에서는 밀수허위신고로 간주하며, 조사결과 고의가 없을 경우에는 부실신고로 처리 하지만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밀수 허위신고에 해당이 된다. 다만, 여기서 해관감관 또는 관세 포탈 등 판단 기준이 해관마다, 심지어 해관 직원마다 달리 주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해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해관의 오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명확하고 투명한 근거자료 등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AA, A 류 통관 기업으로 선정하여야겠다.

해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으나, 수출입 신고전 화물분석이나 사전품목분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관에서 수용 가능한 법규 미 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진 신고하여 해명하는 자세견지가 필요하다.

#### □ 가공무역업체의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 발생

비준 받지 않은 국내 판매의 경우, 과태료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업분류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허위신고에 해당될 경우 밀수에 해당되어 구속 또는 입건까지 가능하다. 또한 가공무역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수책관리를 소홀히 하여 관세, 증치세 (부가가치세), 지연이자 등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관련 법규 숙지와 그에 따른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 □ 품목분류에 따른 추징 또는 통관지연

품목분류는 세율결정, 무역관리 및 수출입통계 등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품목분류의 수출 환급율이 동일할 경우, 종전 품목분류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다가 후에 발견되어 일시에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수출상품에 대한 품목 코드가 없어, '기타', 또는 '기타의 기타'로 분류해 해관의 품목분류 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기된 세 번이 없는 경우 해관은 세율이 높은 품목으로 대부분 분류함으로써 수출입기업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품목 분류 오류 시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으로 수입 시 부담이 가중된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이유로 수입이 긴박한 수입 화물의 통관이 장기간 지체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해관은 종전에 품목 분류한 업무처리 관행에 있어 정정신청 접수 시 매우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부실신고에 따른 소급추징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아예 정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가급적 사전 품목 분류사전회시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통관 대리인에 대한 의존을 지양하고, 수출입

물품의 정확한 품목 분류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개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수출입관세율 및 수출환급율 등에 따른 편법적인 품목분류는 금해야 한다. 잘못된 세번 적용으로 관세율을 낮게 적용 받았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사후에 추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과세가격 평가에 따른 추징 또는 통관지연**  
 과세가격은 세액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진실성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수입물품의

가격신고에 대한 해관의 심사결과, 신고가격이 국내 동일물품 또는 타 수입물품 등의 거래가격보다 낮을 때 저가신고로 의심받게 되므로 신고가격에 대한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증빙이 부족할 경우, 특수 관계까지 의심받게 되며 거래가격에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 경우, 해관은 신고인에게 가격질의 통지서를 발송하고, 설명 자료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수입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입증자료는 항시 염두에 두고 사전준비와 필요 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해관 에서 신고 가격을 불인정할 경우, 이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정확한 절차를 요구해야 한다. 항상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사후에 발생할 수도 있을 법정다툼에 대비해야 하며 신고가격과 무관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특허보세 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 『2012 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이유**

물가안정 등을 위해 원당 등 103 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하여 관세율을 인하, 경쟁력 취약 물품은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위축방지를 위해 15 개 품목은 조정관세를 운용

**2. 개정내용**

물가를 고려하여 현재 할당관세 적용품목 (112 개) 중 분류 등 88 개 품목은 연장 적용  
 • 최근 수입가격이 상승한 귀리 등 15 개 품목은 적용대상에 추가하여 총 103 개에 대해 할당관세 운용  
 - 할당제외 품목(24 개) 닭고기, 젓소, 커피, 원두, 코코넛분말, 코코아원두, 향료, 밀가루, 타이어, 유모차  
 -신규적용 품목(15 개)  
 귀리, 밀짚, 당밀, 밀기울, 야자박, 팜박, 고구마 전분, 변성전분, 인조흑연 등

○ '11 년 조정관세 적용품목(15 개) 중 산업피해 가 우려되는 찐쌀 등 10 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 계속 적용  
 • 국내 산업피해 우려가 적거나 국내 물가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당면 등 5 개 품목은 기존 조정관세율을 2~4%p 인하하여 적용

**3. 시행시기**

2012 년 1.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적용

다만,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돼지고기, 견고추, 마늘 등 3 개 품목은 '12.3.31 일까지, 원당 등 61 개 품목은 '12.6.30 일까지 적용하고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점검하여 연장 여부 검토

□ 『관세법 제 226 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주요

**1. 개정이유**

최근 개정된 2012 HSK 변경사항(세번삭제·신설 등)을 반영하고 사회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증가 등으로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조정 필요

**2. 개정내용**

○ 2012 HSK 개정사항(세번삭제·신설) 세관장 확인 대상 품목에 반영  
 수출지정품목은 HSK 119 개 삭제, 200 개 신설, 수입지정품목은 HSK 711 개 삭제, 1,180 개 신설

○ 국민건강·사회안전·환경보호 관련 품목 조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원료물질 추가 지정에 따라 페닐아세트산(HSK 2916.34-1000) 등 7 개 품목 추가 등

○ 법령 개폐 등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삭제 및 통합

1)외국환거래법  
 수출입시 확인할 필요가 없어진 금화(HSK 7118.90 -1000) 등 3 개 품목 삭제

2)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상 인증업무가 전파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으로 지정된 영상 전화기(HSK8517.69-2000) 등 22 개 품목을 전파법으로 개정 등  
 기타 문화재 보호 등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무단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예술품 세번인 회화(HSK 9701.10-1000) 등



12 개 품목 추가

**3.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내용

**1. 개정내용**

HS 해설서(4 단위: 1221→ 1224(+3), 6 단위: 5,052 → 5,205(+153))

- 국제 식량안보 및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농수축산물물 학명에 따라 세분화

(예) 수생무척추동물 호 신설(제 0308 호), 균질화한 혼합조제식품품 구성성분에 견과류 추가(제 21 류 주 3) 등

- 국제협약상 통제대상 화학물질과 오존층 파괴 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소호 신설

(예) 수산화합물: 제 2852.10 호, 제 2852.90 호 / 오존층파괴물질 : 제 2903.71 호 등

- 신제품 출현, 분류코드의 통합·단순화를 위한 신규 호 신설

(예) 위성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 9619 호) 등

- 국제 무역량 증가에 따른 소호 신설



(예) 워터파이프담배(제 2403 호), 목재펠리트(제 4401 호) 등  
 -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소호 삭제  
 (예) 양모·섬수모제 여자 또는 소녀용 기타의류(제 6211 호), 관 및 관의 연결구류(제 6811 호) 등  
 - 국제 무역량 감소에 따른 소호 통합  
 (예) 모자(제 6505 호), 식탁용품·주방용품 또는 기타 가정용 물품 등(제 7615 호) 등  
 - 기타 특정물품 분류 호 이동  
 (예) 워터제트 절단기(제 8479 호→제 8456 호)

**2. 시행시기**  
 이 고시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 『**주목할만한 고시정사항**』

2012.1.1 부터 발효되는 제 5 차 HS 개정예 따라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의 개정사항을 국내 수용하고, 최근 결정된 WCO HS 위원회 제 46 차부터 제 47 차까지의 'HS 해설서'와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 수용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가 전부 개정됨. 따라서 동일

품목이라도 고시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신중한 품목분류가 요구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이 선 경

[sklee@customsservice.co.kr](mailto:sklee@customsservice.co.kr)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①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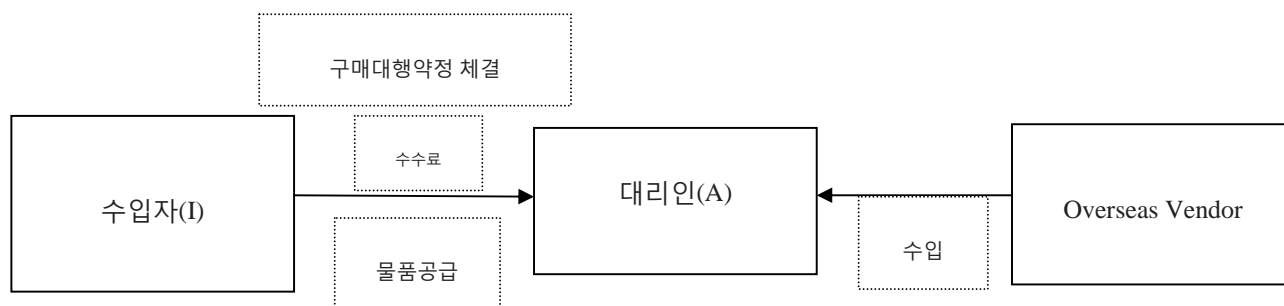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 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테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 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테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구매수수료 과세 (HQ546037 1996.01.3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과세가액은 관세법 제 30 조 1 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세법 제 30 조 2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요소에 해당되는 비용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에 포함되는 비용과 공제되는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거래사실(Facts)**

당해 사안은 미국의 수입자 『Sony Corporation of America』(이하 "S")가 수입한 특정 전자제품의 가격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내용에 관한 것으로 거래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자 S 가 수입하는 특정물품은 텔레비전, 라디오, 비디오 카세트 레코더, 기타 전자제품 임

2) S 는 미국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의 품질에 대하여는 구매일로부터 90 일 또는 1 년의 기간 동안 하자를 보증 함.

3) warranty(하자보증)은 제품의 정상조건에서의 재료상, 제조공정상의잠재적 하자를 커버함.

(The warranty covers latent defects in

material and workmanship under normal conditions)

4) 잠재하자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S 에게 반납하여, 새로운 물품을 받고 S 는 하자상품을 수리한 후 second quality merchandise 로써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함.

5) 또한 S 는 잠재적 하자 상품의 수리를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서비스센터와도 계약, 서비스 센터는 인건비와 부품가격을 포함한 수리비 총액을 수입자에게 청구 함.

6) S 는 발생한 수리비의 총액과 재판매된 제품의 손실을 보여주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록 자료의 사본은 일부 제출 됨.

#### □ 쟁점(Issue)

상기한 수리비용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수입물품에 대한 최우선의 과세가격결정 방법은 관세법(19 U.S.C.) §1401a 규정의 거래가격 방법이다. 동 규정은 거래가격에 대하여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법정 가산 금액을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b)(4)

Generra 판결 (Slip - Op. 89 - 1652 (1990))에 따르면 법원은 수입자가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모두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도록 하는 세관의 입장은 합당하다고 판정한바 있다. 이와는 반대로 402(b)(3)(A)규정에 의하면 특정 요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으며, 402(b)(3)(A)(i)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금액이 구매자 실제금액과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A)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2. 수입자의 주장

상기의 규정(402(b)(3)(A)(i))을 인용하여 수입자는 쟁점대상의 수리비용은 미국으로 수입된 이후 행하여진 수입물품의 유지(maintenance)를 위한 합리적인 가격(warranty)과 연관된 금액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C.S.D. 88-18 을 인용하여 "estimated" repair costs 로써 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3. 미국 관세청의 입장.

TAA 의 402(b)(3)(A)(i)규정은 속성상 warranty /repair costs 를 언급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402(b)(3)(A)(i)규정에 의하여 warranty /repair costs 를 거래가격에서 공제할 권한이 있느냐의 쟁점에 대해 이러한 사안은 일반적으로 턴키계약(turn-key contracts) 하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세관의 입장이다.

이러한 해석은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charges for construction, erection, assembly, maintenance or technical assistance, undertaken after importation on imported goods such as industrial plant, machinery or equipment" should not be included in transaction value) 라고 한 GATT Valuation Agreement 규정이 이를 뒷받침한다.

상기한 규정은 잠재적 하자에 의한 수리(repairs for latent production defects)비를 거래 가격에서 조정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402(b)(3)(A)(i)규정은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거래가격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402(b)(3)(A)(i)규정은 소비품에

대한 하자보증/수리비용을 공제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플랜트, 기계,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의 수리비와 관련된 금액에 적용된다.

이에 덧붙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교환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하자보증을 고려한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은 분명 실제지급 금액의 일부를 이루며, 이는 누구도 공제할 수 없다.

#### □ 결정(Holding)

쟁점 사안에서의 warranty cost 는 실제지급금액과 명백히 구분될 수 없거나 402(b)(3)(A)(i)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도 않는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지사항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비전을 추수하라.



장승희 대표 관세사

2012 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0 여 일이 지났습니다. 흑룡의 해가 되었으니 힘차게 날아오르라며 격려하던 덕담들도 이제는 찾아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세운 올해의 목표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이 새해에 새로 생겨난 목표들이 아닌 몇 해전부터 계속되어온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1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대평가하고,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소평가한다. 멀리 보자 그리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도 화이팅이다!!!" 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1년도 긴 시간인데 10년 동안을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 목표를 올바르게 잡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가진 목표가 내가 바라보는 비전이 올바른 것인지 조심스러워 집니다.

이번 Cover Story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에 대한 기사입니다. 한국정부가 뉴질랜드와 5 번째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AEO 인증은 수출입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부(관세청)에서는 AEO 인증을 받고자 하는 수출입기업 및 물류업체들에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FTA News는 실무적인 FTA 활용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Voices From The Fields는 부산국제우편세관 임창환세관장의 '중국통관 시 애로사항 및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무역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중국 현지 통관 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관세평가는 구매수수료의 과세에 대한 미국 관세청 예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매수수료는 본래 과세하지 않는 수수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매수수료의 과세는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예규를 고객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갈 1년, 10년을 생각하며 이미 살아온 지난 10년을 생각해 봅니다. 추수할 만한 비전을 갖고 있었는지, 그 비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아니 그 비전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고객 여러분, 부디 지난 10년의 비전을 추수하는 한 해, 그리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MRA



차문현 관세사 ([mhcha@customsservice.co.kr](mailto:mhcha@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 대덕전자, 부광약품, 지오디스코리아 등
다수업체 AEO 컨설팅

FTA News-

2012 FTA 활용의 주목할 만한 이슈



최대규 관세사 ([dkchoi@customsservice.co.kr](mailto:dk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원산지관리사 수석합격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



임창환 경영학박사, 관세사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관세 법령 변경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이선경 관세사 ([jsklee@customsservice.co.kr](mailto:jsklee@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FTA T/F Team

US Rulings 연재@

구매 수수료 과세



신성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